

# 고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22
------	-----

제출년월일 : 2001. 11. 26

제 출 자 : 고성군수

## 1. 개정이유

건축법시행령이 개정 (2001. 9. 15. 대통령령 제14,903호)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 규정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가.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의 설치 등으로 법령 등에 부적합할 경우 건축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함.(안 제5조)

나.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서의 가설건축물중 주거환경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간이축사 등의 설치를 금지함.(안 제8조)

다. 도시계획구역 밖의 건폐율을 준농림지역 40퍼센트, 자연환경보전지역 40퍼센트, 기타지역 60퍼센트로 정함.(안 제21조)

라. 도시계획구역 밖의 용적율을 준도시지역 200퍼센트(개발계획미수립지역 80퍼센트), 준농림지역 80퍼센트,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기타지역 200퍼센트로 정함.(안 제23조)

마. 공동주택의 일조권확보를 위한 띄어야 할 거리중 동일한 대지안의 측벽과 측벽간의 거리를 6미터에서 4미터로 완화함.(안 제29조)

##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건축법 제5조의2(기존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제15조(가설건축물), 제47조(건축물의건폐율), 제48조(건축물의용적율), 제53조제4항(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입법예고 : 결과 의견내용 없음

## 4. 분 문

- 붙임과 같음

## 고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할 수 있다”를 “영 제6조의2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제15조제5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다만, 제10호를 제외한다

제21조 중 제1호 내지 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준농림지역 : 40퍼센트
2. 자연환경보전지역 : 40퍼센트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 또는 구역 : 60퍼센트

제23조 중 1호 내지 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준도시지역 : 200퍼센트(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0퍼센트)
2. 준농림지역 : 80퍼센트
3.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4. 제1호 내지 3호 외의 지역 또는 구역 : 200퍼센트

제29조 제2항 제2호 다목 중 “6미터”를 “4미터”로 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 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등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 신 · 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법제5조의 2 및 영제6조의 2 규정에 의한 사유로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건축할 수 있다 1. 기존건축물의 개축 2. 증축·개축하고자하는 부분이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제5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 --- --- --- --- 영 제6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할 수 있다. <삭제> <삭제>
제8조(가설건축물) (생략) 1.(생략) 2. 영 제15조제4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제8조(가설건축물) (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 영 제15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다만, 제10호를 제외한다
제21조(도시계획 구역밖의 건폐율) (생략) 1. 농림지역 : 60% 2. 준농림지역 : 40% 3. 자연환경보전지역 : 60% 4. 준도시지역 : 60%(다만, 다른 법률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그 규정에 의한다)	제21조(도시계획 구역밖의 건폐율) (현행과 같음) 1. 준농림지역 : 40퍼센트 2. 자연환경보전지역 : 40퍼센트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 또는 구역 : 60퍼센트
제23조(도시계획구역 밖의 용적율) (생략) 1. 농림지역 : 100% 2. 준농림지역 : 100% 3. 자연환경보전지역 : 100%(다만, 수산자원보전지구안에서는 200%로한다) 4. 준도시지역 : 200%(다만, 준도시지역내 각 지구에서 따로 정할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23조(도시계획구역 밖의 용적율) (현행과 같음) 1. 준도시지역 : 200퍼센트(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0퍼센트) 2. 준농림지역 : 80퍼센트 3.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지역 또는 구역 : 200퍼센트
제29조(일조권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②(생략) 1.(생략) 2.(생략) 가.(생략) 나.(생략) 다. 축벽과 축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6미터 이상	제29조(일조권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②(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가.(현행과 같음) 나.(현행과 같음) 다. --- --- 4미터 ---